
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안내

- 1 신청방법: 신청기간 내에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(www.kosmes.or.kr)를 통해 온라인 신청
 ※ 세부절차는 '이자환급 신청 매뉴얼'(중진공 홈페이지의 알림광장→공지사항에서 확인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※ 공인인증서(기업용), 사업자등록증명(스캔) 준비 후,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(실적 증빙서류 등은 불필요)
 ※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이후, 법인전환 등의 사유로 사업자번호, 업체명, 대표자가 변경된 사실이 있을 시, 온라인 환급신청 전에 변경내용을 관할 지역본(지)부에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. (이자환급 신청매뉴얼 p.7 참조)
- 2 신청기간: 2021. 7. 1.(목) ~ 2021. 7. 30.(금)
- 3 신청대상: 2020년도 상반기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업체 中 일자리 또는 수출 성과창출 기업
 (※ 2020년도 하반기 대출업체는 2022년 1월에 환급신청 가능)

1. 일자리창출

- (환급대상) 대출 전월과 비교하여 **대출 후 3개월 내**(대출일 포함)에 **고용창출한 기업**
 (단, **대출 후 12개월**(대출일 포함) 시점까지 **고용유지** 필요)
 * 시설자금 대출기업 : 3개월 내에 고용창출이 없었던 기업 중 대출 6개월 내 고용창출이 있는 경우 실적 인정
- (환급금액) 대출금액 x 환급적용금리(증가인원 **1인당 0.2%p**) (1년간 납부한 이자총액 이하 범위 내)
 ⇒ (환급금액 예시) 2억원 대출 후 고용인원이 5명 증가한 경우, 2억원×5명×0.2%=200만원 환급
- (성과확인기준) 근로복지공단 **고용보험 가입인원수**(월말기준) (환급신청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)
 ⇒ (환급여부 예시) '20년 5월에 대출을 받은 기업의 경우, 아래와 같이 확인

월별 고용보험 가입인원 총원(월말기준)			환급여부 [고용(A→B) 후 유지(B→C) 필요]
(A) 대출전월 (20.4월말)	(B) 대출일포함 3개월제 (20.7월말)	(C) 대출일포함 12개월제 (21.4월말)	
10명	10명	15명	고용실적(A→B)이 없으므로 환급불가
30명	34명	37명	고용(4명) 및 유지되었으므로 0.8%p 환급
30명	37명	33명	고용(7명) 중 유지(3명)에 대하여 0.6%p 환급

2. 수출성과

- (환급대상) **신시장진출지원자금** 대출기업 中 아래의 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에 해당되는 기업
- | 구 분 | 직수출 금액 합계 | | 대출전→후
증가율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| 대출전 12개월
(대출일제외) | 대출후 12개월
(대출일포함) | |
| 수출성공 | 10만\$ 미만 | 10만\$ 이상 | - |
| 수출향상 | (충족요건 無) | 50만\$ 이상 | 20% 이상 |
- (환급금액) 대출금액 x 환급적용금리(수출성공·수출향상시 **0.3%p**) (1년간 납부한 이자총액 이하 범위 내)
 - (성과확인기준) 한국무역통계진흥원 **수출입증명**(직수출) (환급신청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)
 ⇒ (환급여부 예시) '20년 5월에 대출을 받은 기업의 경우, 아래와 같이 확인

직수출실적(해당기간 합계)		환급여부
대출전('19.5월 ~ '20.4월)	대출후('20.5월 ~ '21.4월)	
1만불	20만불	수출성공 에 해당되므로 0.3%p 환급
10만불	20만불	대출전 실적이 10만불 이상이므로 환급불가
30만불	50만불	수출향상 에 해당되므로 0.3%p 환급
30만불	40만불	대출후 실적이 50만불 미만이므로 환급불가
50만불	55만불	대출전 대비 20% 미만 증가하였으므로 환급불가

- * 본 제도는 정책자금 대출에 따른 성과에 대한 우대제도로, 명시된 기준시점 전후의 성과창출은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
- * 환급금액: 대출금액×환급적용금리(0.2%p~) (단, 분할대출 또는 중도상환한 경우 환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)
- * 환급한도: 1년간 납부한 이자총액 이하(중진공 수납 기준)
 - 금융회사를 통한 대리대출의 경우, 대출금리에서 취급수수료(1.0%) 차감 후 수납한 이자금액 기준으로 환급
- * 환급불가 기업: 휴·폐업 / 약정해지 / 연체(신청 및 정산 시) / 투융자복합금융 또는 고정금리 자금 대출(청년 창업, 창업성공패키지, 재해, 무역조정 등)
- * 2020년 중으로 2회 이상 대출받은 기업의 경우, 일자리창출 및 수출성과 유형별로 각 1건씩 선택 必